##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59 발 의 년 월 일:2022년 08월 12일 발 의 자:최호정, 고광민, 김규남,

김혜영, 옥재은, 유정인, 이경숙, 이상욱, 이종태, 이희원, 임춘대, 정지웅, 채수지, 최유희, 허 훈 의원(15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가능한 내국인주민을 주된 지원대상 자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 산부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 이에 국 적・인종 등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노력하 도록 규정하고, 아울러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도 산전・산후 우울증 검사 등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국적·인종·종교·나이·신체조건 등에 따라 지원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(안 제3조제2항).
- 나. 제4조의3 이하의 임산부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하 도록 규정하여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등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4조의3).
- 다.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계속 거주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4조의4제1항제1호).

### 3. 참고사항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###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·인종 ·종교·나이·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의3 중 "임산부"를 "임산부(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로 한다.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"임산부"를 "임산부(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)"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8397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(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를 제2조(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)로 하고, "이후 임신한 사람"을"현재 지원 대상자부터 소급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 략)         | 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| ②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적・인종・종교・나이・신체조</u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          |
| 제4조의3(산전・산후 우울증 검사        | 제4조의3(산전・산후 우울증 검사    |
| 등 지원) 시장은 <u>임산부</u> 에게 필 | 등 지원) <u>임산부(「다문화</u> |
|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          | 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      |
| 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          | 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      |
| 원을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| 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      | 제4조의4(임산부 교통비 지원) ①   |
|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.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   |
| 1.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|
| 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할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있는 <u>임산부</u>             | 임산부(다문화가족의 구성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       |

2. (생략)

② ~ ⑦ (생 략)

부칙 <제8397호, 2022.4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<u>2022년</u> 7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현재 임신 중이 거나 2022년 7월 1일 <u>이후 임신</u>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 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)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부칙 <제8397호, 2022.4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<u>공포한</u>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) 제 4조의4의 지원대상은 2022년 7월 1일 <u>현재 지원 대상자부터</u> 소급 적용한다.